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안

제출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생활 밀접분야의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법」이 개정(법률 제000000호, 2020. 12. 00. 공포, 2021. 1. 1. 시행) 됨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 정원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하며, 이하 “시·도”라 한다) 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도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3조(정원의 배정 등) 제2조에 따른 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경찰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총 계	48
경찰공무원 계	48
총경 이하	48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9